



[2017. 12. 3.] [28453 , 2017. 11. 28.,]

() 044 - 202 - 2558

1 () 「 」
. < 2008. 6. 11.>

2 (가) 가
가 「 」 (" ") 7

. < 2008. 6. 11.>
1

가 ,

1

3 () 13 2 5
10 31

[2012. 8. 3.]

4 <2012. 8. 3.>

5 (가) 13 3 2 가 . .
(" . ") 13 3 1

12 31 . < 2015. 7. 24.>

13 3 2 가 . 2

[2012. 8. 3.]

5 2() 13 4 1 13 2 1

3

1. 「 」 5 가 . 47 2

2. 「 」 11 2

3. 「 」 36 2

4. 「 」 12 2 가

5. 「119 . 」 22 2 .

6. 「 」 7 1

7. 「 」 32 1

8. 「 」 51 .

13 4 1 . 가 13 3 1 .

1. 25 1 가 1 1 , 5 6

2. . .

가. 26 1

. 29 1

. 30 1

. 31 1

3. 27 1 (" ")가 2

3 , 7 8

1

1. , ,

2.

3. 「 」 3

4.

5.

3

, 1 「 」 21 .

[[2015. 7. 24.](#)]

6 () 13 5 5 3 . (解囑)

.< [2016. 5. 10.](#)>

1.

2.

3. , ,

4.

13 5 (" ") ,

.< [2016. 5. 10.](#)>

.< [2016. 5. 10.](#)>

(開議) , .<

[2016. 5. 10.](#)>

1 ,

.< [2016. 5. 10.](#)>

가 , ,

.< [2016. 5. 10.](#)>

1 7

.< [2016. 5. 10.](#)>

[[2012. 8. 3.](#)]

7 (.) 13 6 1 . (" . ") 1 1 10 .< [2012. 8. 3.](#)>

가 , 가

.< 2012. 8. 3., 2015. 7. 24.>

- 1.
- 2.
3. (" ")
4. .
5. 「 」 2
- 6.

.< 2016. 5. 10.>

- 1.
 - 2.
 3. , ,
 - 4.
- [2012. 8. 3.]

7 2() 14 1 12 " " 「
 , . 」 22 1 1 2
 1 [「 , .
 」 41 (14 1
)] .<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
 [2012. 8. 3.]

8 (.) . 14 2
 . (" . ") .< 2010. 3.
 15.>

1. . . .
 2. . . 가 1 .
- .< 2010. 3. 15.>
 [2008. 12. 31.]

8 2() 15 2 1 가

- 1.
- 2.
- 3.
4. .
5. 가
- 6.
- 7.

- 8.
- 9.
- 1.
- 2.
- 3.
- 4.
- 5.
- 6.
- 7.

15 2 1

[2014. 9. 18.]

8 3() 15 2 2

가

15 2 2

가

12

가

[2014. 9. 18.]

9 ()

가

18

가

가

. < 2008. 2. 29., 2010. 3. 15.>

()

가

. < 2008. 2. 29., 2010. 3.

15.>

가

1

. < 2008. 2. 29., 2010. 3. 15.>

10 () 18 3

2008. 2. 29., 2010. 3. 15.>

1

- 1.
- 2.
- 3.

11 () 19 1 ("

. < 2008. 2. 29., 2010. 3. 15.>

- 12 () 19 2 . 21
 1 (代支給) 「 」 62 가 (")
 가 ") . < 2008. 2. 29., 2008. 6. 11., 2010. 3. 15., 2012. 8. 3., 2012. 8. 31.>
 1 (" ")
 가 . .< 2008. 2. 29., 2010. 3. 15.>
- 13 (.) 가 (" 가 ")
 . 2 .
 . < 2008. 2. 29., 2010. 3. 15.>
 1 .
 1.
 2.
- 14 () . < 2012. 8. 3.>
 1. 22 1
 2.
 3.
 4.
- 15 () 가
 . 가 . < 2008. 2. 29., 2010. 3. 15.>
- 16 () 가
 2 . < 2008. 2. 29., 2010. 3. 15.>
 1 .
 1.
 2.
 가 .
- 17 () 21 4 .
- 18 () 22
 . < 2012. 8. 3.>
 1. (" ")
 2.
 [2012. 8. 3.]
- 19 () 22
 . < 2012. 8. 3.>

- 1.
2. 24 ()
[2012. 8. 3.]
- 20 () 가 22 1
가
. <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1 3 .< 2012. 8.
3.>
가 1
. < 2012. 8. 3.>
. <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2012. 8. 3.]
- 21 () 가 22 2
22 4 , 1
(" ")
12 . < 2012. 8.
3.>
[2012. 8. 3.]
- 22 () 가 22 4
15 1 . < 2012. 8. 3.>
- 23 (가) 22 5 6 가
. < 2012. 8. 3.>
- 1.
2. 가
3. 가 가 가
가 22 5 가 ,
,
10 . < 2012. 8. 3.>
[2012. 8. 3.]
- 23 2() 27 3
. .
1. 25 1
2. 26 1
3. 「 」 4
27 3
[2015. 7. 24.]
- 24 () 28 1
. <

2015. 7. 24.>

1. . . .

2. .

3. , , 가

4. 11

5. , , 가 , ,

28 2 가

.< 2015. 7. 24.>

.< 2015. 7. 24.>

1 2

.< 2015. 7. 24.>

[2015. 7. 24.]

25 () 36 3 1 .

.< 2008. 2. 29., 2010. 3.

15.>

1 「 . 」 2 4

() .< 2008. 6. 11.>

.< 2008. 2. 29., 2010. 3. 15.>

26 () 36 4

「 가 」 가 .

[2015. 12. 22.]

26 2() 36 3 1

3 12 31

1 (

) 43 (

)

36 3 1

[2017. 5. 29.]

[26 2 26 4 <2017. 5. 29.>]

26 3() 36 3 3 1

1. 「 」 4

2.

3.

36 3 3

36 3 3

36 3 3

2 4

[2017. 5. 29.]

26 4(가) 47 2 1 6 " "

500

47 2 1 7 " .<

2014. 7. 7., 2015. 7. 24.>

1. (「 」 2 2 「 」
2 2) 2

가 1

2. 「 」 2 5 2

가 3

3. 「 」 2 5 (3) 2

가 1

4. 「 」 5 1 2

5. 「 」 4

6. 「 」 5 1

7. 「 」 11 , 「 」
2 13 , 「 」

8. 「 」 5 가 5

9.

10. .

[2012. 8. 3.]

[26 2 <2017. 5. 29.>]

27 (가) 가 가 51 3
가 1 .

1.

2.

가 가 51 4 .

1.

- 2. ()
- 27 2() 22 1
가 「 」 23 , 19
1 4 가 .
1. 22
2. 22 2
(23 2 26)
가 「 」 23 ,
18 2 , 19 1 4
가 . < 2015. 7. 24.>
1. 13 4 1 3 . ,
2. 36 37
3. 38
4. 28 1 2
, . . (.)
가 「 」 19
1 , 2 4 , 가 .
1. 18 가
2. 51 가
3. 53
4. 55
5. 56
6. 57 .
[2012. 1. 6.]
- 28 () 57 2 .
1 . < 2008. 2. 29., 2010. 3.
15.>
, . . 57
. <
2008. 2. 29., 2010. 3. 15.>
- 28 2() 28 1 1 2014 1
1 3 (3 1 1)
.
[2013. 12. 30.]
- 29 () 62 2 .
[2008. 6. 11.]

< 17883 ,2003. 1. 7.>

< 18390 ,2004. 5. 24.> ()

1 () 2004 6 1 .

2

3 ()

6 3 2 " " " " .

⑱

4

< 19493 ,2006. 5. 30.> ()

1 () 2006 6 1 .

2 3

4 ()

8 4 " 5 " " 5 1 " .

< 19513 ,2006. 6. 12.> ()

1 () 2006 7 1 .

2 3

4 () <160>

<161>

6 3 2 3 "3 " "3 "

<162> <241>

< 19806 ,2006. 12. 29.> (가)

1 () 2007 1 1 .

2 4

5 () ⑳

㉑

6 4 4 " 11 " " 「 가 」 74 " .

③② ④②

6

< 20679 ,2008. 2. 29.> (가)

1 () .

2 8

9 () ④⑤

④⑥

3 1 · 2 · 4 5 , 5 1 2 , 6 3 4 5 , 8
, 9 1 3 , 10 1 , 11 , 12 1 2 , 13 1
, 15 2 , 16 1 , 26 , 28 2 , 29 1 · 2 3 , 2

" " " 가 " .

6 2 " " " 가 " .

6 3 3 " " " 가 " .

20 1 4 , 25 1 3 , 28 1 , 29 4 " " "
가 " .

2 " " " 가 " .

④⑦ <80>

< 20816 ,2008. 6. 11.>

2008 6 15 . , 29 2008 6 22 .

< 21095 ,2008. 10. 29.> ()

1 () 2008 12 22 .

2 ()

26 2 7 " 「 」 2 " " 「 」 11 " .

3

< 21226 ,2008. 12. 31.>

< 21882 ,2009. 12. 14.>()

1 () . < >
2 5

6 ()

⑯

26 2 3 " 「 」 2 6 3)" " 「 」 2 5 (3)" .

⑰ ⑳

7

< 22075 ,2010. 3. 15.>()

1 () 2010 3 19 . < >

2 () <117>

<118>

3 1 • 2 • 4 5 , 5 1 2 , 6 3 4 5 , 8
1 3 , 9 1 3 , 10 1 , 11 , 12 1 2 , 13 1
, 15 2 , 16 1 , 26 , 26 2 9 10 , 28 2 2 "

가 " " " .

6 2 " 가 " " " .

6 3 3 " 가 " " " .

20 1 4 , 25 1 • 3 28 1 " 가 " " "

<119> <187>

< 23488 ,2012. 1. 6.>()

1 () . < >

2

< 23755 ,2012. 4. 27.>()

1 () .

2 ()

26 2 1 " 「 」" " 「 」" " 「 」" " 「 」" .

< 24019 ,2012. 8. 3.>

2012 8 5 .

< 24077 ,2012. 8. 31.>()

1 () 2012 9 1 . < >

2 7

8 () ⑳

㉑

12 1 " 「 」 55 " " 「 」 62 " .

㉒ ㉓

9

< 24175 ,2012. 11. 12.>

< 25050 ,2013. 12. 30.>()

2014 1 1 . < >

< 25191 ,2014. 2. 18.>

2014 6 5 .

< 25448 ,2014. 7. 7.>()

1 () 2014 7 8 .

2

3 () ㉔

㉕

26 2 2 1 " 「 」 3 1 " " 「 」 2 2 " .

㉖ ㉗

4

< 25612 ,2014. 9. 18.>

2014 9 19

< 25751 ,2014. 11. 19.>()

1 () , 5

2 4

5 () <313>

<314>

7 2 " " " .

<315> <418>

< 26444 ,2015. 7. 24.>

2015 7 29

< 26742 ,2015. 12. 22.>(가)

1 () 2015 12 23 .

2 ()

26

26 () 36 4

「 가 」 가 .

< 26916 ,2016. 1. 19.>(, .)

1 () 2016 1 21 . < >

2

3 ()

7 2 " 「 . 」 " " 「 , .
「 " , 「 . 」 「 ,
.

4

< 27129 ,2016. 5. 10.> ()

< 28069 ,2017. 5. 29.>

2017 5 30

< 28211 ,2017. 7. 26.> ()

1 () , 8

2 7

8 () <233>

<234>

7 2 " " " ..

<235> <388>

< 28453 ,2017. 11. 28.>

1 () 2017 12 3 , 2 2 2018 5 30

2 ()

2 2

2 1 • 2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같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총수입금액

(2)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구급차운용수입금액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 수입금액(단위 : 100만원)	1일 과징금액(단위 : 원)
1	50 이하	30,000
2	50 초과 ~ 100 이하	45,000
3	100 초과 ~ 200 이하	6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75,000
5	300 초과 ~ 400 이하	90,000
6	400 초과 ~ 500 이하	115,000
7	500 초과 ~ 600 이하	130,000
8	600 초과 ~ 700 이하	14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150,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16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170,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175,0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18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185,0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190,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195,0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2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205,0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210,000
20	9,000 초과	215,000

[별표 2] <개정 2017. 11. 28.> [시행일 : 2018. 5. 30.] 제2호아목 및 자
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응급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1호의2	50	75	100
다.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4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4호의3	50	75	100
사. 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4호의4	50	100	150
아.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2	50	75	100
자.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4	20	40	60

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3	50	100	150
카. 법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4호	50	75	100
타. 법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5호	50	75	100
파.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6호	50	100	150